■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6. 28.>

(앞쪽)

사 업 장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 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 처리량 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잔재물 발생내용		처리 방법	처리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364㎜×257 ㎜(백상지80g/㎡)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3.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중간처분의 경우는 일반소각·고온소각 등으로, 최종처분의 경우는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재활용의 경우는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